

2024년 제 6차 직원채용 공고

대전광역시가족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05. 03.

대전광역시가족센터장

I. 채용개요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직위	담당직무	인원	채용기간
1)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신규사업)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직업 사전교육,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5.27.~24.12.31. <p>※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사업 운영 기간이 연장될 경우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가능</p> <p>※ 만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가능</p>

※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성별 ·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응시원서 내 채용분야 체크필수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보수	근무지
1)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신규사업)	주 5일(9:00~18:00)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12: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사업안내 호봉기준에 따른<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수당, 종사자특별수당, 급량비, 명절상여금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 그 외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에 따라 연장 및 휴일 근무로 근무시간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 휴무 가능

3 응시 자격 및 채용 기준

가. 응시 자격

채용분야	자격기준
1)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호(가~다) 중 1가지 이상 갖춘 자는 지원가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채용 기준

- 응시연령 : 정년(만 60세) 1년 미만인 자는 응시 불가
- 임용관련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다음 결격사유(1~14)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폐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신체검사결과(「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4. 「2024년 가족사업안내」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II. 채용절차 및 일정

1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4. 05. 03.(금) ~ **24. 05. 16.(목) 13:00 까지**
- 합격발표 : 24. 05. 17.(금), 홈페이지 합격자 게시 및 개별통지

나. 2차 면접전형

- 일정 및 장소 : **24. 05. 21.(화) 10:00**,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내 진행
- 전형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선발방법 : 심사위원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선발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이메일(dj9989@hanmail.net) 접수
 -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 : 입사지원_지원자성명_생년월일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인정기준
공통 (필수)	응시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개인정보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첨부된 기관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만 인정
	졸업 및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지원자격기준의 관련학과 확인)
해당자	경력(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근무지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기준 및 가산점 증빙용
	건강가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

* 각 증명서류의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으로, 응시원서 상에 기재한 사항과 제출서류의 불일치,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판명 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

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사무국) ☎ 042-252-9989 → 내선 5번 연결

3 유의사항

- 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나. 경력 기간은 공고일 기준이며, 접수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센터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접수하지 않음.
- 다.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음.
- 라. 적격자 없을 때,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며 불합격발표를 시점으로 14일 이내 청구 가능(우편발송 불가, 방문 수령)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바.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및 차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끝.

취업취약계층 범주

-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